

광주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가단5674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말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5279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가단5674 판결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형욱

변 론 종 결 2021. 1. 20.

판 결 선 고 2021.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1. 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9. C 명의의 수협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31. C의 처 D, 딸 E로부터 “차용인 D, E, C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5호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D, C이 어선운영에 따른 비용을 위하여 금전대여를 요청하여 5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2015. 12. 19. 20,000,000원, 2016. 4. 18. 30,000,000원, 이자 연 18%(1부 5리)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빌려주게 되었는데, D, C이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금만 2017. 7. 6.까지 입금하였고, 2018. 10. 31. 다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보증인으로 E를 추가로 입보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D, C,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19차20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D, C,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1. 30. 확정되었다.

라. C은 2019. 10. 21. 처남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143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중 D, E의 작성명의 부분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빌린 위 50,000,000원은 D이 차용한 것으로서 C은 위 대여금 채무의 존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보전채권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먼저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D으로부터 C 명의가 포함된 차용금증서를 받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C 등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중 피고 작성명의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4, 5,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C 명의의 수협은행 예금계좌는 1991. 6. 5. 개설되어 그때부터 계속하여 처 D이 관리하여 왔다.
- ② 위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D, E는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으나, C의 이름과 서명은 D이 기재하였으며, C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데, D이 당시 C으로부터 차용금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③ 원고는 위 차용금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C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C은 어업에 종사하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E는 식당일을 도우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는 우편물은 모두 위 식당으로 배달되었고, C에 대한 지급명령은 E가, C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D이 각 수령하였는바, 비록 C과 D, E가 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C이 위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명령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원고는 지급명령신청 시 2015. 11. 19. 50,000,000원을 빌려줄 당시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후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 2015. 11. 19. 무렵 작성된 C 명의의 차용금증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선

별지

목 록

1. 전남 영광군 F 대지 452㎡
2. 위 지상 목조와읍 단층주택 83.4㎡
3. 위 지상 G동 경량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76.44㎡. 끝.